

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77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1999. 7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'98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('99.3.31 공포)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 “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”를 “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”로 개정함
- 나.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함
(안 제4조제1호 삭제)
- 다. 농지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조문 및 별표2를 삭제함(안 제12조 및
별표2 삭제)

- 개정조례안 : 별첨
-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 - 농지법 제25조
 - 농지법시행령 제27조
 - 농지법시행규칙 제22조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- 사전예고결과
 - 예고기간 : '99. 5. 26 ~ 6. 14 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기타 참고사항

- <별표2> 농지 임차료 상한(제12조 관련)
- 경기도 관련 공문 사본 : 농정51311-1300('99.4.7)호

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”를 “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”을 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u>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</u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 1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. ~ 8. (생략)</p> <p>제12조(임차료의 상한)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</p> <p><별표2> 농지 임차료 상한(제12조 관련)</p> | <u>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</u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|

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

〈별표 2〉

농 지 임 차 료 상 한(제12조 관련)

| 구 분 | 일반경종작물 | | 시설원예작물 | | 다년성농작물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답 | 전 | 답 | 전 | 과수 | 묘목 | 인삼 | 약초 | 기타 |
| 본 오 1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월 피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부 곡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원 곡 본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선 부 2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선 부 3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반 월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안 산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| 대 부 동 | 190 35 | 340 | 500 | 500 | 40 | - | - | - | 40 |

주 : 임차료 상한은 정액법(원/m²)과 정율법(%)으로 기재하되 윗칸에 정액법
아래칸에 정율법을 기재한다.